



‘17년 한-베트남 반부패 · 옴부즈만 MOU 협력회의의 출장 결과

2017. 1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I 출장 개요

□ 개요

- 기간 : '17. 11. 28(화) ~ 12.1(금), 3박 4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중앙 내무위, 검찰원), 호치민(지방 검찰원)
- 출장단 구성 : 김현철 상임위원, 백승수 교통도로민원과장, 백선경 사무관, 김일문 주무관 및 변규태 주무관

□ 주요 활동

- 베트남 중앙내무위와의 반부패 정책협의회
 - MOU 이행현황 점검, 청렴교육 제도 소개*, 내년도 사업계획 논의 등
 - * '16년 MOU 이행 협력회의에서 베트남측이 소개 요청
- 베트남 검찰원과의 옴부즈만 정책협의회
 - 양 국의 상대국 거주 교민 민원처리현황 공유, 베트남 교민대상 홍보방안 논의, 110콜센터 운영 및 집단민원 조정제도 소개 등
- 주베트남 한국기업인 고충청취간담회(호치민)
 - 주베트남 상공인연합회, 한인무역인협회, KOTRA등의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검찰원 호치민 지부 방문
 - 지방검찰원 운영 현황 및 중앙 검찰원과의 협력내용 등 청취

□ 출장 일정

구분 \ 일자	11.28.(화)	11.29.(수)-하노이	11.30.(목)-호치민	12.1.(금)
내용	09:40 ·출국	09:00-13:00 · 권익위-중앙내무위 정책협의회 - 반부패 정책 및 협력활동 발표	11:30-13:30 · 주베트남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13:55 ·출발
	12:45 ·도착 ·대사관 총괄 영사 오찬	14:00-16:00 · 권익위-검찰원 정책협의회 - 민원현황공유 및 정책교류	15:00-17:00 · 검찰원 호치민 지부 방문	21:15 · 귀국

II 출장 결과

1 반부패 MOU 이행 협력회의

1. 회의 개요

- 목 적 : 한-베트남 MOU 협력방안 논의 및 반부패 정책 공유
- 일 시 : '17.11.29.(수) 09:00~12:00
- 장 소 : 중앙내무위원회 회의실(베트남 하노이)
- 참 석(14명)
 - 위원회(5명) : 상임위원, 교통도로민원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백선경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 중앙내무위원회(9명) : 중앙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법률국 국장, 종합연구국 국장, 반부패감독 부국장 등
- 주요내용
 - 2017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활동 보고
 -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MOU 향후 계획 협의
 -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발표 및 질의응답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20	○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상임위원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09:20~12:00	○ 주요 반부패 정책 활동 공유 - (위원회) 한국의 반부패 청렴 교육 발표 - (중앙내무위) 베트남 반부패 정책과 활동 발표	
	○ 반부패 MOU 협력회의 - (중앙내무위) 2017년 MOU 이행 활동 보고 - (양측) 향후 협력방안 논의	
12:00~13:00	○ 오찬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주재

2. 회의 결과

□ 인사말씀

-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권익위의 베트남 방문으로 양 기관 간 협력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함
 -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2017년 협력 활동에 대해 점검하며 내년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상임위원) 2010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양국의 반부패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위원회는 부패 척결에 대한 베트남의 의지를 지지하며, 양국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내무위원회와 지속 협력할 것임

□ 주요 반부패 정책·활동 공유

- (위원회) 청렴연수원 조직, 예산, 시설 현황 및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체계, 청렴교육 운영 현황, 청렴콘서트 등 청렴교육과정 전반 소개
- (중앙내무위) 중앙내무위 기관 소개, 최근 반부패 활동 현황 및 부패방지법 개정 현황 등 발표

□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베트남 측의 수요를 반영하여 2018년도 협력 대상으로 ▲ OECD 뇌물방지협약 참여 지원 ▲ 부패재산 환수(자산회복) 경험공유 선정
- 대표단 상호 방문(베트남 중앙내무위 2018년 방문 예정),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한 자료 공유,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정책 교류 (2018년 중앙내무위 주관 세미나 개최 예정), 직원 연수 실시를 통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 방안 논의

※ 내무위는 '18년도에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권익위의 참석과 발표를 요청함

3. 세부 내용

□ 인사말씀

-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권익위 상임위원님을 포함한 대표단 여러분의 중앙내무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MOU 기간 동안 중앙내무위와 권익위는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해왔음.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협력의 질적 수준도 높았다고 생각함
 - 이번에는 양 기관이 한국의 청렴교육과 최근 베트남 반부패법 개정 사항 등 중앙내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을 공유하고 올해 협력활동을 점검하며, 내년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양국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내무위와 권익위 간 보다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상임위원) 대표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내무위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0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양국의 반부패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베트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중앙내무위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함
 - 위원회는 부패 척결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를 지지하고, 양국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내무위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MOU 기간 동안 반부패 정책의 공유 및 정책 연수 등을 통해 양국이 자국의 반부패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희망함

□ 주요 반부패 정책·활동 공유

○ (위원회)

- 위원회 주요 기능 소개
- 한국의 새 정부 반부패 정책 방향
- 청렴연수원 조직, 예산, 시설 현황 및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체계, 청렴교육 운영 현황, 청렴콘서트 등 청렴교육과정 전반 소개

○ (중앙내무위)

- 베트남 반부패 활동(2017)

- 반부패 체계를 보완하고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법, 신고자 보호법, 국가재산 사용법을 수정중임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패행위도 예방할 수 있었음. 또한, 공직자 대상으로 재산신고를 받았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도덕성을 감독하였음
- 감찰원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법률과 행정적 위반이 있는 행정 문건을 폐기하였으며 부정부패에 관한 200여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하였음. 현재 베트남 상황에서는 부패 적발과 처벌이 부패 예방보다 더 중요함

- 베트남 반부패 관련 기관 활동

- (중앙내무위) 반부패법을 수정·보완하여 국회와 당에 제출하고 반부패 관련 법률과 각 기관들의 규정을 검토·수정하는 역할을 함. 중앙내무위는 특정 부패사건을 적발했을 때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함

- (감찰원 반부패국) 일반적 부패 사건과 감찰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 신고 업무도 담당함
- (공안부 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국)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함. 2017년 베트남에서 여론이 뜨거웠던 사건을 두 부서에서 맡음

- 베트남 반부패법 개정내용

- 지난 10년간 반부패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반부패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최근 국회에 제출했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내용)

-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적발·처리하기 위해 반부패법의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각 기관의 부패행위가 보도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직접 설명 또는 해명해야하며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함
- 현금 사용으로 인한 부패예방을 위해 국가예산 200만동(1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좌로 이체해야함
-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산변동관리 및 공직자의 수입 공개 등에 있어서의 한계점 보완
- 부패 적발을 위해 감찰·감사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고, 부패자산 환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함
- 뇌물 제공자가 적발되기 전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규정

○ 한국의 청렴교육 소개 질의응답

<질의응답>

Q. 청렴연수원에서 고위공직자도 청렴교육을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교육내용과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A. 권익위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지는 오래되지 않음. 청렴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고위공직자임.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얼마나 좋은 콘텐츠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청렴연수원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달 60명씩 하루 일정으로 1회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프로그램은 청렴에 전문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외부 교수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교육 내용으로는 특강형식 강의,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청렴콘서트,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편지를 써보는 시간 등 여러 콘텐츠로 교육을 하고 있음

Q. 청렴연수원에서 일반공직자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강사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직위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는 강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A. 청렴연수원에는 전임 교수는 없음. 그래서 외부 교수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내부 전임 교수를 활용하여 교육 시 직급이 아주 높은 장·차관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오히려 외부 교수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면도 있음

Q. 교육과정 이수자가 많다고 설명 하였는데, 교육 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A. 교육이 실시되고 나면 교육종료와 동시에 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이 끝난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업무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미흡점이나 보완할 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음

Q. 청렴교육 후 업무로 복귀해서도 청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교육 전과 후의 인식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들도 개발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특정한 개인이 교육을 받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므로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같이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관대상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협력활동 점검

○ (협력성과)

-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내무위 위원장과의 면담 실시(3월, 하노이)
 - 중앙내무위 국장급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등 위원회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3월, 세종)
 -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지 정착 지원 및 부패영향평가 등의 정책 전수를 위한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10월, 세종)
- 베트남측은 아직 정보교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협력활동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 상호 대표단 교류, 초청연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매우 효과적으로 협력활동을 하였음. 양 기관 정보교환은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를 안내하였고 협력 빈도는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베트남 측은 내년 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 OECD 뇌물방지협약 참여 지원 ▲ 부패재산 환수(자산회복)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
- 또한, 한국의 반부패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청렴 교육을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기를 희망
- ⇒ 베트남 측의 협력분야 제안에 동의하며, 내년 2월 방한 시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반부패 연수 실시 가능성을 제안
- 베트남 측은 내년도에 반부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계획 단계이며 구체적 사항은 미정)이며, 권익위의 참석과 발표를 요청
- ⇒ 위원회는 베트남 측에서 세미나의 세부 계획을 송부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 제시

□ 마무리말씀

-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음. 베트남은 한국의 반부패 활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함
 - 특히, 오늘 강의해주신 청렴교육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램
 - 베트남은 반부패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내무위는 부패신고자 보호, 독자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반부패 활동 평가 도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내무위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램
- (상임위원)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주요 반부패 정책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 남은 MOU 기간 동안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양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반부패 역량강화에 도움 되기를 희망함

2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 회의 개요

- 목 적 :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및 협력방안 논의
- 일 시 : '17.11.29.(수) 14:00-16:00
- 장 소 : 베트남 감찰원 회의실(베트남 하노이)
- 참석(12명)
 - 위원회(5명) : 상임위원, 교통도로민원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백선경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 감찰원(7명) :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국제협력국 국장, 국제협력국 부국장, 반부패국 부국장, 민원처리 중앙위원회 부국장, 조직인사국 부국장, 국제협력국 조사관
- 주요 내용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및 질의응답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상임위원
14:10-14:25	15분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소개	백승수 과장
14:25-15:45	80분 (각40분)	○ 양 기관 정책교류 - (위원회) 110 콜센터·집단민원 조정사례 소개 - (감찰원) 베트남 민원접수 절차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 소개	백승수 과장
15:45-16:55	10분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홍보방안 논의	백승수 과장
16:55-17:00	5분	○ 마무리말씀	상임위원

2. 회의 결과

□ 인사말씀

- (감찰원) 베트남 방문 환영인사와 내년도 위원장님 초청 의사를 밝힘
- (위원회) 양국 정상외 양국거주 재외국민 권익보호 노력 합의를 언급하며, 동 회의가 양국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를 소망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 (감찰원) '16.9월~'17.11월간 한국교민 접수민원은 13건이며, 형사·세무·세관 및 노동 관련 건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음
※ 세무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감찰원 부원장이 재무부 차관에게 우호적 처리를 요청함
- (위원회) '16.4월~'17.11월간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로 접수된 베트남 민원은 총 32건으로, 주로 출입국 관련 법무 분야가 대다수였음

□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 (감찰원) 위원회로부터 전수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 및 '베트남 민원접수 절차 및 처리 프로세스' 소개
- (위원회) 위원회의 대표적 민원접수 시스템인 '110 콜센터'와 '경주시 고충민원 조정사례' 소개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 익일 개최예정인 주베트남 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접수될 한국교민 민원에 대한 감찰원 측의 우호적 처리 약속
※ 10월 이동신문고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을 소개하며, 감찰원 측도 한국교민 민원에 대해 우호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
- 교민 접근성이 높은 상대국 대사관을 통한 MOU 홍보 활성화 합의
- 위원회의 베트남어 홍보 브로셔 제작에 대한 감찰원 감수 요청 및 향후 이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전달하여 홍보할 것임을 알림

3. 세부 내용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 감찰원

- 최근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과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베트남 방문 관광객 중 한국인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16년 말 기준 15만 명의 한국 교민이 하노이와 호치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감찰원에 제기된 한국인 민원은 총 13건임. 이 중 형사분야 4건, 세무분야 3건, 세관분야 2건, 사법분야 2건, 노동과 환경분야 각각 1건씩임.
- 주베트남 한국 교민수를 감안할 때 민원수는 많지 않으나 베트남 정부는 한국교민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우호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음
- 특히, 세무분야 민원 중 한 건은 아직 해결 중에 있는데,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감찰원측이 재무부 차관에게 직접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직접 전달하였음
-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양국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양 기관이 최선을 다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점에서 베트남은 특히 다문화 베트남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임

○ 위원회

- 지난해 4월 협력회의 이후 올해 11월까지, 한국의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전국을 다니며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베트남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음
-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인 혹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 제기한 민원은 총 36건 이였으며, 이 중 13건은 베트남어로, 23건은 한국어로 접수가 되었음.

- 분야별로는 법무분야 16건, 경찰분야 6건, 교육분야 5건, 외교분야 2건, 노동분야 1건, 그 외 기타분야 민원이 6건 이였음
-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법무분야의 경우, 비자 발급 및 갱신과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한 방문방법 문의 등 출입국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접수된 모든 민원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서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를 총 4차례 진행한 바 있음
- 이 중 베트남 국적자, 혹은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민원은 총 9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법무분야가 6건, 복지분야가 3건이였음.
- 이동신문고에서 접수된 법무분야 민원 역시 출입국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음. 복지분야의 경우 결혼 이주자의 가정폭력,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 등 결혼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였으며, 위원회는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음

□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 · 소개 및 질의응답

○ 감찰원 - ①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소개

- 베트남 반부패 정책 개요 : 베트남의 반부패법은 2006년 제정됨. 적용대상은 정부기관과 공공병원, 학교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있음. 베트남은 정부차원의 반부패 역량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경과 : 기존에 베트남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평가체계는 주관적 평가에 치중하여 효과가 미미했음. 2015년 UNDP와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시책평가를 접하고 이를 도입한 이래로 2016년 지방정부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 '17년 3월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19개 평가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지방정부에 적용시 지방 인민위원과 관련부서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음.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후계획 : 베트남 반부패법에 부패방지 시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시범 평가시에도 인프라 구축과 예산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권익위가 기술적·전문적 경험을 전수해주길 바라며, 예산상 지원도 가능하다면 지원해주길 요청함

○ 감찰원 - ② 베트남 민원접수 절차 및 처리 프로세스

- 민원제기권한 : 베트남에서 민원제기권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임. 헌법 제 3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가능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관은 이를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음. 이 외에도 인권법 등 많은 법률에서 민원제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됨
- 민원제기방법 : 동사무소와 모든 정부부처에 1) 직접 방문, 2)우편 접수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동사무소는 신고자가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에 제기하면 됨.
- 민원처리절차

①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신분확인이 필수적임. 본인이 직접 가거나, 법적 대표인 혹은 위탁인이 신고를 할 수 있음. 민원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우편접수의 경우, 본인 혹은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단체민원의 경우 모든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함. 익명신고더라도 민원 접수 내용에 정확한 날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접수를 하고 있음. 지방에서는 인민위원장(시장)이 직접 접수를 받기도 하는데, 한 달에 한번 민원 접수실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음

② 분류 : 민원 접수가 합법적 근거 내에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절차. 관련법상 동일 신고를 여러 곳에 한 경우, 최초 신고 접수기관 외에는 민원을 접수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임

③ 처리 : 신고의 내용을 보고 해당 민원을 처리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접수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면 직속상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며 접수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처리가능 기관으로 이관함

- 베트남 신고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개인만 신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기업, 기관, 조직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 확대, ② 인터넷과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확대

○ 위원회 : 110 콜센터 현황, 기능 및 고충민원 조정사례 소개

- 위원회 발표 관련 질의응답

<질의응답>

Q.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건 정도의 조정을 하는지?

A. 주요 조정건수는 일주일에 1-2건 정도 있음

Q. 110 콜센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의(Ex.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런 경우 식사를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지?

A. 상담사들을 위해 청탁금지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문의가 들어오는 일반적인 사례와 관련한 문의에는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함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 상대국 재외국민의 고충처리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를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지난해 10월 위원회가 실시한 이동신문고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건의한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 사례* 안내
 - ※ 국제결혼시 배우자 및 시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국적취득과 연계하여 의무화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위원회는 본 건의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 위원회 대표단이 익일 호치민에서 한국 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고 동 간담회에서 베트남 정부에 법령이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나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베트남 부원장이 적극 협조기로 약속함
- 위원회는 양 기관 MOU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국 거주 국민들에게 MOU 체결을 적극 홍보할 것을 제안함
 - 실제 교민들이 고충 발생시 대사관에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므로, 상대국 대사관에 MOU 체결 및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
 - 위원회는 홍보 브로셔 베트남어 번역본을 감찰원에서 감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완성본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전달, 비치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홍보할 계획임을 알림
 - 베트남 감찰원에서도, 현지 대사관을 통한 MOU 홍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홍보하기로 함

1. 회의 개요

- 목 적 : 베트남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 일 시 : '17.11.30.(목) 11:30-13:30
- 장 소 : 호치민 한식당 예가
- 참 석(16명)
 - 위원회(5명) : 상임위원(주재), 교통도로민원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백선경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 호치민 총영사관(2명) : 문병철 상무관, 천현길 경찰영사
 - 유관기관(2명) : 윤주영 KOTRA 무역관장, 최광식 무역보험공사 지사장
 - 경제단체(2명) : 최홍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상근부회장, 김태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장
 - 기업(5명) : 한호성 신한은행 부행장, 김규백 우리은행 지점장, 김정식 KB보험 소항, 한윤준 광장 변호사, APEX 김병석 사장
- 주요 내용
 -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인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 한국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 재외국민 민원접수 방법 및 절차 안내

2. 주요 결과

□ 간담회 접수 민원 (1건)

▷ 민원개요

○ 민원인 : Apex Vietnam Co., LTD 김병석 대표

○ 민원내용

- '14년 5월 13일 베트남 애국 청년단의 반중시위대가 BINH DUONG성내 중국·대만 공장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인 '아펙스 베트남'을 습격, 재산상 피해와 대표가 상해를 입은 사건 발생
- 사고 다음날 BINH DUONG성 부성장 및 외무국장 등 간부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의 보험금 처리가 완료된 후 피해 보상과 공장 복구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 사고이후 김병석 대표가 파악하여 '14년 5월 26일 BINH DUONG성, 성 공단관리부, 성 경찰 등에 보고한 총 피해금액은 약 180만 USD이었음.
- 베트남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을 믿고 공장규모를 50% 감축하여 공장을 2년간 가동하였음.
- 그러나, 2년 후 ①삼성화재는 52만 USD를 보험금으로 산정하였고 ②BINH DUONG성과 BINH DUONG성 국세청은 17만 USD를 토지임대료 보전 및 근로자 임금 보조 명목으로 지급함

※ 총 피 해 액 : USD 1,797,618

베트남정부보상액 : USD 187,554.25

삼성화재 보험금 : USD 522,283.86

미보상 총금액 : USD 1,087,779.89

- 반중시위대의 습격 이후 공장규모를 50% 줄여 가동하였으나, 지속적 손실이 발생함. 이에 '15년 1월 21일 김병석 대표는 BINH DUONG성 정부에 ①사회보장보험금 및 기타 세금을 유예시켜 줄 것과 ②2년간 내지 못한 보장보험금을 미보상 총금액에서 상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임
- 회사는 정부의 보상이 더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복구가 불가하고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2016년 10월 26일 휴업함
- 베트남 정부는 2년간 내지 못한 보장보험금(USD 480,435.47)을 이유로 김병석 대표를 2016년 6월 21일 출국금지 시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 ☞ 이상의 내용으로 베트남 중앙정부 수상 및 수상실, 재무부, 법무부, 세무국, 투자국, 빈증성 관련 부서, 사회보장 보험회사 그리고 법원 등에 공문을 보냈으나 미해결 상태임

▷ **민원인 요청내용**

- ① 김병석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
- ② 미보상 총금액과 미 납입한 사회보장보험금 및 이자의 상계처리
- ③ 요청내용 ②에서 상계처리한 잔액 지불 요청

□ **한국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1건)**

○ **온라인 쇼핑몰 대체 인증수단 도입 요청**

- 현재 한국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스템으로는, 30만원 이상의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함
- 현재 인증절차로는 ①공인인증서, ②본인명의 휴대폰, ③아이핀이 있으나, 모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발급·사용이 가능

- 외국에 거주중인 교민들의 경우, 한국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거래에 제약이 많음

※ 특히 해외 거주 기업인들의 경우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증수단의 제약 때문에 해외 쇼핑물을 이용하는 현실임

□ 재외국민 민원제기 방법 안내

- (對한국정부) 한국국적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국국적의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안내

* 주민등록이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를 할 수 없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권익위와 재외동포재단이 협업하여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재외동포 신문고를 개설함

- (對베트남정부) 지방감찰원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우편 혹은 방문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외국인도 동일하게 민원제기권이 있음을 안내

4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지부 기관방문

1. 방문 개요

- 목 적 : 베트남 감찰원의 중앙-지방조직간 역할·권한 이해
- 일 시 : '17. 11. 30.(목) 15:30-16:30
- 장 소 : 베트남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 참 석(18명)
 - 위원회(5명) : 상임위원(주재), 교통도로민원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백선경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지부(13명)

구분	국문성명	영문성명	직함
1	응웬 롱 뚜옌	Nguyen Long Tuyen	호치민 감찰원장
2	응웬 키엔	Nguyen Kien Quoc	호치민 부감찰원장
3	레 반 흥	Le Van Hung	호치민 부감찰원장
4	전 딘 쯔	Tran Dinh Tru	호치민 부감찰원장
5	휴인 탄 썬에우	Huynh Thanh Trieu	사무처장
6	레 꽝 민	Le Quang Minh	민원 조사·처리 1과장
7	팜 흥	Pham Lam Hong Chuyen	민원 조사·처리 2과장
8	딘 띠 뚜	Dinh Thi Thu	민원 조사·처리 3과장
9	레 띠 단 쯔라	Le Thi Thanh Tra	민원 조사·처리 4과장
10	보 띠 탄 반	Vo Thi Thanh Van	민원 조사·처리 5과장
11	응웬 띠 단 뚜이	Nguyen Thi Thanh Thuy	민원 조사·처리 6과장
12	팜 반 응이	Pham Van Nghi	감찰 및 반부패 과장
13	응웬 탄 쯩	Nguyen Thanh Trung	감독 및 사후감찰 과장

2. 주요내용

□ 감찰원 호치민 지부 기관소개

- (조직) 호치민 감찰원 조직은 20개부서와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명의 지도부(원장1명, 부원장 4명)로 구성됨
- (기능) 호치민 감찰원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옴부즈만 기능과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음
 - ※ 지방 감찰원의 조직·인사권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감찰원장 임명시 중앙 감찰원장의 동의를 필요함

□ 위원회 기관소개

-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질의응답>

Q. 행정심판은 무엇인지?

- A.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관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음. 행정심판이 접수된 경우 조사를 거쳐 관련처분을 무효화하거나 관련기관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이 있음. 행정심판은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임

Q. 기업관련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A. 2009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기업민원 인터넷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Q.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A. 한국이 개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III 평가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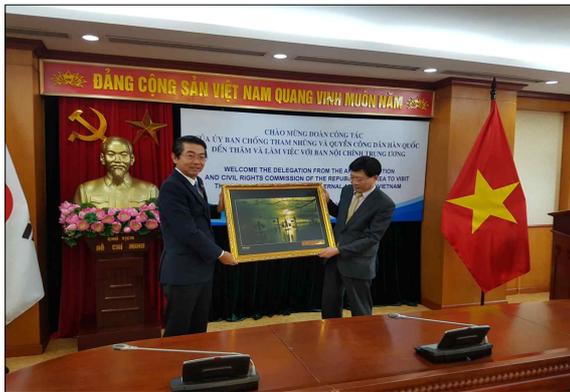
□ 반부패 MOU 협력사업

- 한-베트남 반부패 MOU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의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고 향후 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 양국의 반부패 정책 및 현황 공유를 통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 파악
 - 베트남 측의 관심사항인 청렴교육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수립 지원
- 중앙내무위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2018년 구체적인 협력분야 도출
 - 내년도 베트남측의 위원회 방문 시 OECD 뇌물방지협약 지원 및 부패재산 환수(자산회복) 분야* 소개
 - *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분야 발표·소개 요청
 - 반부패 관련기관 및 청렴연수원 방문 등 현장방문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옴부즈만 MOU 협력사업

- 현지교민·대사관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상호 호혜적인 민원처리 유도로 실질적인 재외국민 권익증진 성과 도출
 - 현지교민·대사관과 협력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지 민원처리 기관(감찰원)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미해결 민원 해결을 지원
 - ※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특성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지교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위원회의 간담회 개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음
 - 그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감찰원 고위급의 한국 교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 확인
 - ※ 장기미해결중인 한국교민 민원 해결을 위해 감찰원 부원장이 재무부 차관에게 우호적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옴부즈만 MOU 협력회의(11.29)에서 안내받음

- MOU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베 정상회담(17.11.11) 결과 및 감찰원 요청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MOU 이행 계획 수립
 - 내년 감찰원 방한시기(8월 예정)에 맞추어 주한베트남 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개최 검토
 - ※ 한-베 정상회담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자 권익개선 문제가 논의된 바 있음
 - 베트남 신고법 개정으로 전화·온라인 민원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한국의 110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에 대한 맞춤형 정책전수 추진
- 간담회 제기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 (접수민원) 사실관계 정리 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
 - (제도개선 건의사항) 처리부서를 지정, 사실관계 조사·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처리



기념품 교환



협력회의

<반부패 MOU 협력회의>



단체사진



협력회의

<음부즈만 MOU 협력회의>